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김성회·오세희·장종태

민병덕 · 염태영 · 이기헌

전진숙・조 국・안태준

이인영 · 이해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,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·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,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,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·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

116조 등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누구든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0조제6호 중 "제116조를"을 "제1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"로, "한"을 "하거나 알선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6조(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	제116조(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		
금지) (생 략)	금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		
	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누구든지 제99조에 따른 학		
	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		
	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
	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		
	하여서는 아니 된다.		
<u><신 설></u>	③ 누구든지 「정보통신망 이		
	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		
	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		
	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		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
	사항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		
	<u>다.</u>		
제15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50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			
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			
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<u>제116조를</u> 위반하여 대가를	6. 제1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		
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			
<u>한</u> 사람	<u>하거나 알선한</u>		